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I. 제안공모 제출 및 심사방법

1. 공모안 제출

가. 제출 요령

1) 제출일시 및 장소 : '설계공모 공고서'에 의한다.

2)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안을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 지정장소에 접수 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한 자의 공모안에 한하여 접수한다.

나. 제출도서 : 설계공모 참가자는 반드시 'II. 공모안 작성·제출지침'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비용부담 : 응모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제출일시 및 장소의 변동 등 공지사항이 생긴 경우 [전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홈페이지(<https://office.jbedu.kr/jeonjuedu>) - 시설지원과 자료실]에 게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진다.

(수요기관 담당자 연락처 :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신소영, 063-270-6182)

2.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 명단은 [별표 1]에 따르며,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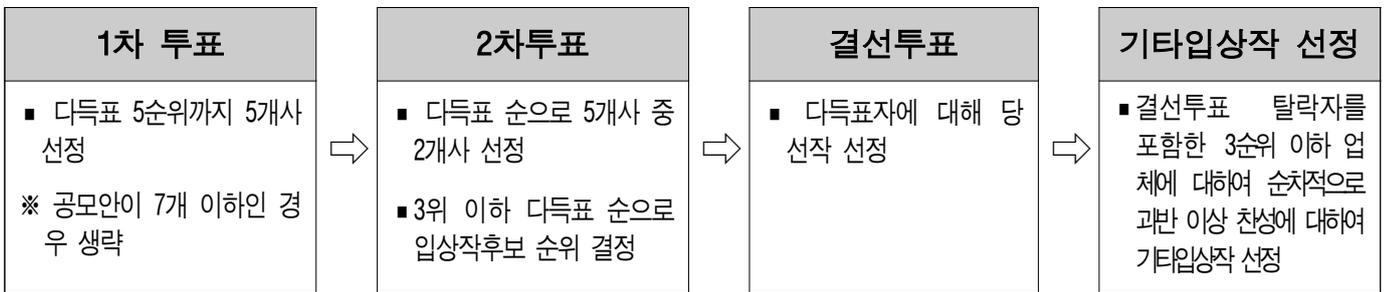
나. 심사방법 : 심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1)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 후, 결선투표를 실시

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 2) 심사대상 공모안이 7개를 초과하는 경우 2단계로 나누어 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다 득표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여 2차 투표 대상자를 선정한다.
- 3)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득표순으로 3위 이하 순위를 결정한다.
- 4)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 5) 단계별 심사위원의 투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투표제 절차 》

- 6) 설계지침 준수 항목 및 범위는 [별표 3]에 의하며, 설계지침서 미준수 공모안에 대한 조치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조를 따른다.

라.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심사대상자의 기피·제척신청 : 공모안 제출마감시한까지

※ ‘e-발주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접수(미제출시 기피·제척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심사위원의 회피신청 : 2023. 8. 17. 10:00~18:00

(※ 동 날짜 10:00내에 심사대상자 명단을 위원에게 송부)

3) 심사위원이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4조제1항각호의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마. 공모안의 평가 주안점 및 실격기준

1) 평가 주안점 : [별표 2]

2) 공모안의 실격기준 : [별표 4]

바. 심사결과 발표

1) 투표결과, 평가사유서 및 입상작 공모안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용역 입찰공고 상세 화면)에 공개한다.

2) 심사결과 공개 시 입상작 공모안은 구성 항목 중 과제 1의 첫 1개 쪽을 공개한다.

(※ 본 지침 “II. - 1. - 1) -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1” 해당)

3) 미입상 업체는 최종 점수 및 사유서 공개 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공모안을 공개하지 않는다.

사. 기타

1)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심사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공모안 제출자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입상작 및 대우

1) 당선작 : 해당 설계용역 수행권을 부여

2) 기타입상작 :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에 따름

3. 제출 공모안에 대한 소유권

- 가. 계약부서는 당선작을 포함한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다.
- 나. 수요기관은 입상작을 전시 또는 출판 등으로 사용, 공개할 수 있다.
- 다. 수요기관은 입상작 외의 공모안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전시 또는 출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 라. 공모안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완료 후 7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계약부서는 임의 처분할 수 있다.

II. 공모안 작성·제출 지침

1. 공모안 작성 및 제출요건

- 1) 공모안의 형식과 규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항목	세 부 사 항	매수 (단면인쇄)
1	표지	앞	1매
2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2
		○ 과제에 대한 제안 (별도 지침서 참조) - 과제 1, 과제 2, 과제 3	6 (과제당2)
		○ 수행계획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	2

- 2)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횡으로 작성한다.

- 3) 내용은 컬러(색상) 표현 가능하다.
- 4) 설계공모 참가자의 실적을 활용한 표현은 금지한다.
- 5) 설계공모 참가자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 표기는 금지한다.
- 6) 공모안에 건축물의 조감도, 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스케치 포함)를 포함할 수 없다.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붙임 2] 참조)
- 7) 공모안 내의 이미지에 치수 및 축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단, 층고 또는 천장고의 표현, 기존 시설물(장비 포함)에 대한 치수 표현은 가능)
- 8) 앞표지는 제공된 표지서식[서식 5]을 사용하고, 뒤표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 9) 앞표지를 제외한 공모안의 내용은 **10쪽** 이내로 작성한다.

【 쪽수 산정 방법 】

< 공모안 작성 내용(앞표지 제외) >

- [서식 5]에 따른 앞표지를 제외하고 제출한 전자파일(PDF)의 모든 쪽수를 산정
- 인쇄내용이 없는 간지 등을 추가 삽입한 경우 1쪽으로 산정

*** (참고예시) 공모안 내용을 10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할 경우 쪽수 산정 예시**

- ① 1~10쪽(공모안의 내용) : 적정
- ② 1쪽(앞표지) + 2~11쪽(공모안의 내용) : 적정
- ③ 1쪽(앞표지) + 2~11쪽(공모안의 내용) + 12쪽(백지 또는 내용 포함)
: 부적정

- 10) 공모안 접수 일시 및 장소는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르며,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한 자의 공모안에 한하여 접수한다.
- 11) 공모안 제출방법은 ‘설계공모 공고서’를 따르며, 공모안 외 ‘기타 제출물’도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12) 공모안 제출은 설계공모 참가자별 1회에 한하며, 제출된 공모안에 대하여는 추가 제출이나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할 수 없다.
- 13) 본 지침에 의거하지 않은 공모안은 계약부서에서 접수하지 않거나,

심사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2. 기타 제출물 작성 및 제출요건

가. 담당건축사의 경력증명서

- 경력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등)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한다.

나.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서(또는 발주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건축사의 경력증명서 상에 해당 실적의 사업명이 명시된 경우에 실적으로 인정된다.
-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된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예) aaa project, 000기지(이전) 시설공사 등은 불인정

- 실적은 설계공모 공고서에 명시된 본 용역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 실적증명서에서 용도의 해당여부와 건축 또는 대수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응모자가 추가 증빙서류(건축협의회서, 허가서,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민간 실적의 경우에는 추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 본 지침의 [서식 2]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청렴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3]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날인한다.

마. 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4]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날인한다.

바.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 제척 및 기피 신청할 경우에만 본 지침의 [서식 6]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사.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 본 지침의 [서식 7]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아.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 본 지침의 [서식 8]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제출한다.

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9]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차.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제출한다.

카.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제출한다.
-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을 제출할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및 업체등록인감 날인

<공모안 발표 및 질의응답>

○ 심사대상자 참석 일시, 장소

- 일시 : 2023. 8. 29. 14:00
- 심사장소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e-발주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상에서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를 제외하며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자 신원 확인

- e-발주시스템에서 발표자는 발표하기 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원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질의응답)자 :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심사일 전일 18:00까지 담당자 e-mail(saywer@korea.kr)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표 및 질의응답 관련 지침

- 발표자는 제출한 공모안 전자파일(pdf)을 온라인(e-발주시스템) 상에서 심사위원에게 발표한다.
- 업체 당 발표시간은 **7분 이내**, 질의응답시간은 **5분 내외**로 실시하며, 질의응답시간은 질의시간과 응답시간 모두를 포함한다.(단, 심사위원회 합의에 따라 시간이 조정 될 수 있음)
- 사전에 정해진 순번대로 회의에 입장하여 발표를 실시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회의에 입장할 수 없다.
- 발표자는 발표 및 질의응답에 사용할 개인용 컴퓨터 및 스피커, 마이크 등을 시스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를 부주의하여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상기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대표자 (건축사)	(인)	전화번호	
설계 사무소명		FAX번호	
소재지		E-MAIL	
지침서 (Page)	질의내용		
	<p>* 질의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질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간, 방법, 담당자 연락처는 '설계공모 공고서'를 참조)</p>		

청 렬 서 약 서

- 용역명 : 전주화산초 그린스마트스쿨 증축공사 설계용역
- 발주기관 : 조달청(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당사는 『전주화산초 그린스마트스쿨 증축공사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조달청장(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 약 서

당사는 『전주화산초 그린스마트스쿨 증축공사 설계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방법, 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 없이 귀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조달청장(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5]

공모안 표지 (A3, 횡)

80
전주화산초 그린스마트스쿨 증축공사 설계용역
10
공모안
40
2023. .
◦“글씨체” - 제목 : 휴먼명조 48 Point - 날짜 : 휴먼명조 40 Point

(단위 : mm)

※ 외곽선은 표지 (A3)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시에는 선이 없음

※ 간격 및 글씨체는 권고사항임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 사업명 : 전주화산초 그린스마트스쿨 증축공사 설계용역
- 제척 및 기피위원

성명	소속	전문분야	제척 및 기피사유

- 주) 1. 근거 및 사유 필히 제시
2.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20 년 월 일

제출자 소속 :
 연락처 :
 직위 :
 성명 : (인)

조달청장 귀하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 『전주화산초 그린스마트스쿨 증축공사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귀 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한 결과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8조에서 정한 내용에 제척 및 기피위원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 『전주화산초 그린스마트스쿨 증축공사 설계용역』의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이 「조달청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당사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내역(자문 등의 명칭, 수행기간, 관련 업체명)을 귀 청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조달청장 귀하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 『전주화산초 그린스마트스쿨 증축공사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조달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별표 1]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

□ 심사위원

전문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건축계획	동양대학교	김종하	
	계원예술대학교	어정연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진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동훈	
	동아대학교	이상진	
	이룸건축사사무소	송은정	수요기관 추천
	전라북도교육청	임종수	수요기관 추천

□ 예비심사위원

전문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건축계획	창원문성대학교	강인철	순번 1
	경기도	김태철	순번 2

※ 심사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으로 인한 결원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 심사위원으로 대체

[별표 2]

평가 주안점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경력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제안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 수행계획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 기준 쪽수 초과 ○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포함 ○ 이미지에 치수·축적에 관련된 내용 포함
그 밖의 사항	○ 심사위원 사전 접촉 이력

[별표 3]

설계지침서 준수 항목 및 범위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조제1항 관련)

분야	준 수 항 목	준수 범위	비고
공모안 작성 요건 위반	가. 기준 쪽수 이내	10쪽 이하	
	나.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미포함	미포함	
	다. 이미지에 치수·축척에 관련된 내용 미포함	미포함	
불공정 행위	가.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	미해당	

비고

1. ‘불공정행위’ 분야의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은 설계공모 시행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장이 시행한 설계공모에서 ‘사전접촉’으로 조달청장으로부터 실격통보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해당 이력은 개정 규정이 시행한 날(‘19.5.15.자) 이후 실격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별표 4]

공모안의 실격기준

- 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개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 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 다.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 마. 설계지침 미준수(또는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 바.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사.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거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발표 시 심사위원에게 자신을 특정하여 인지도시킨 경우
- 아. 그밖에 해당 공모안이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격으로 결정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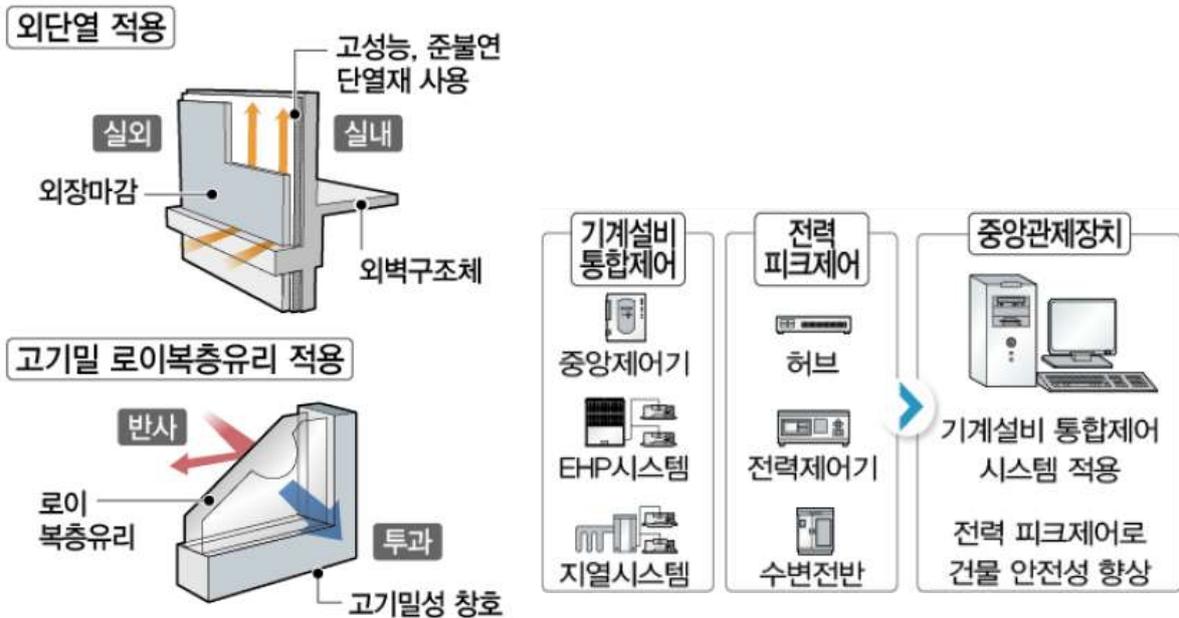
[붙임 2]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 허용 이미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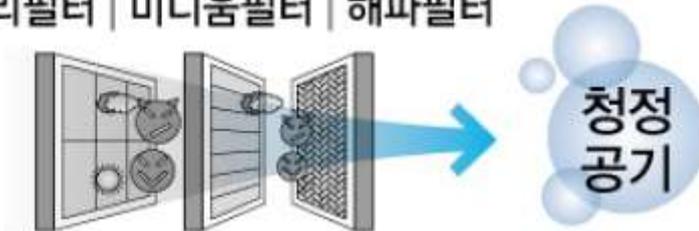
① 목차 등 단순 아이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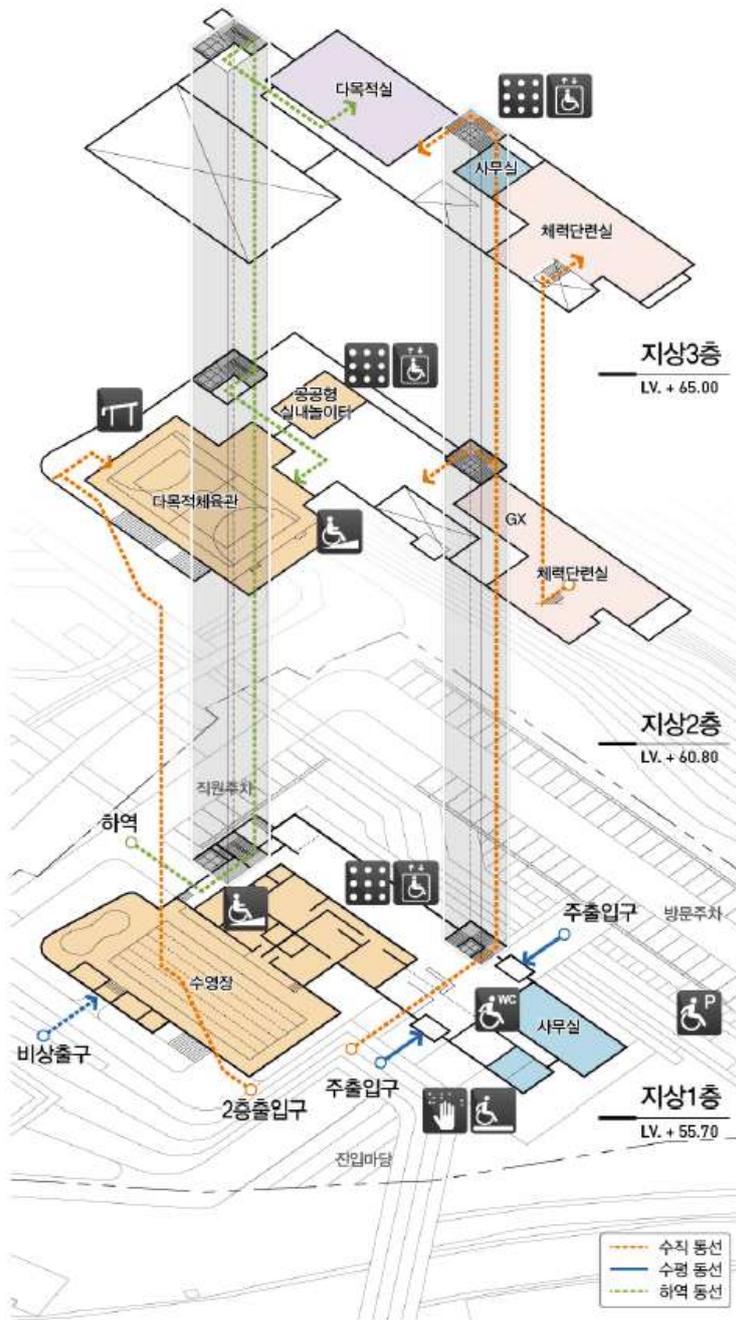
② 자재 상세, 설비개념도 등 이미지



프리필터 | 미디움필터 | 해파필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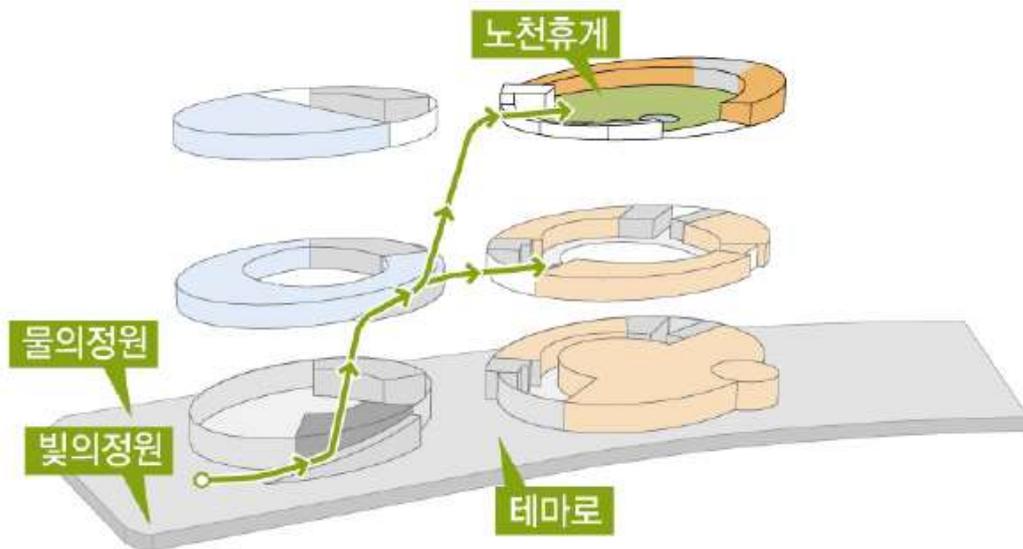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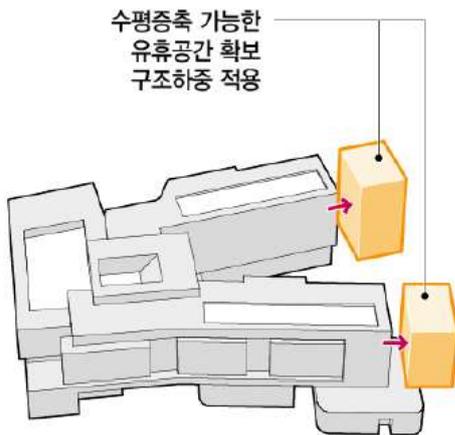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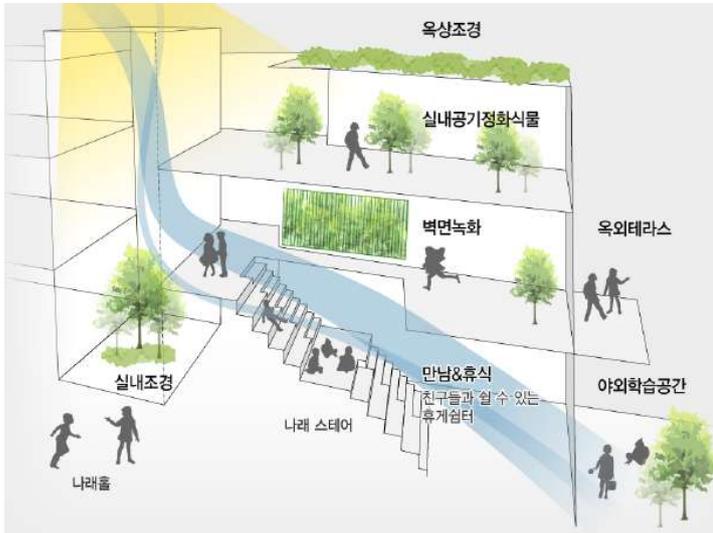


③ 2차원 이미지를 일부 변형하여 적층한 이미지



□ 불허 이미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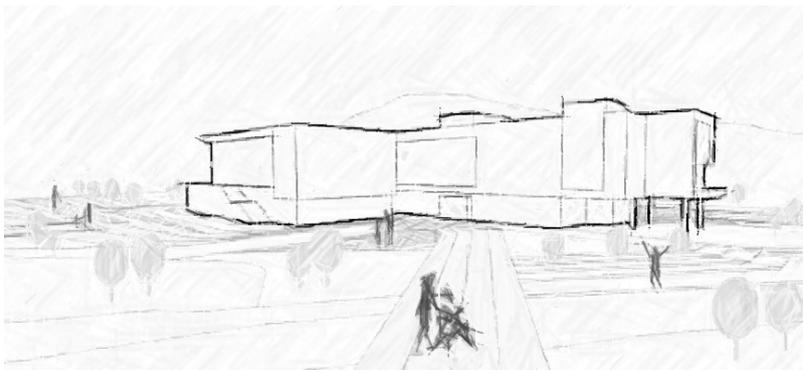
① 개념 설명을 위한 3차원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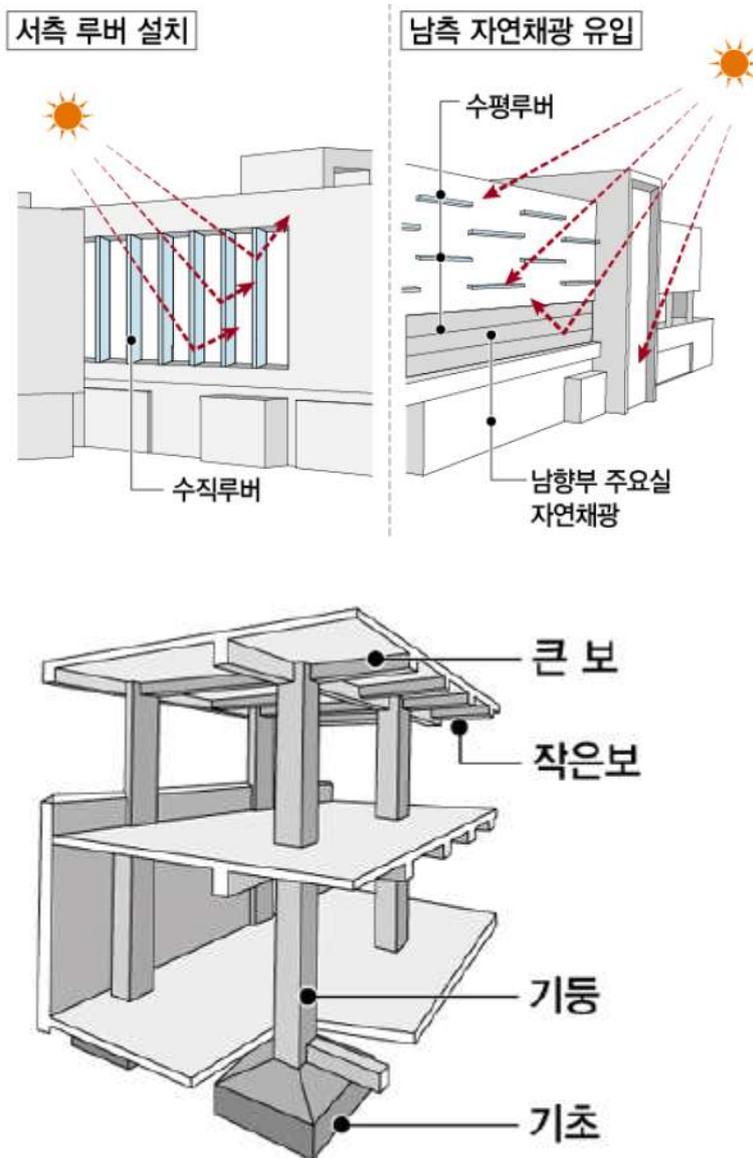
② 조감도 등이 포함된 3차원 이미지



③ 3차원 이미지 스케치



④ 건축물을 일부 표현한 3차원 이미지



※ 그밖에 실내 투시도 등 심사위원회가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이미지는 불허 이미지로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할 수 있다.